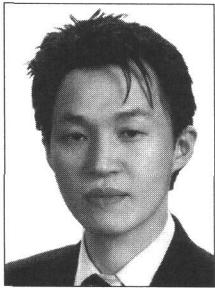


환경부의 일방통행 도가 지나쳐



배정식
본회 지도부장

환경부의 일방적인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발표와 입법예고로 축산업계가 온통 시끄럽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이 보는 가축분뇨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대상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무허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용증지명령 및 폐쇄명령, 3억이하 과징금 신설을 의기양양 들고 나왔다. 가축 분뇨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축산 농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안정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환경부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그들의 축산분뇨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가축분뇨 관리,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한다’ 제하의 보도자료는 축산분뇨를 자원이 아닌 폐수로 낙인시켜 놓고 있다. 통상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 보면 음식물은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자원’이다.

축산분뇨 또한 마찬가지다. 축산분뇨를 폐수로 볼 것인지 자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공동입법으로 만들어진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축산분뇨를 오염물질이 아닌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자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해당부처인 농식품부와 축산업계와의 사전 조율 없이 축산분뇨 선진화 대책이란 미명하에 밀어붙이기식 입법예고는 환경부가 말하고 있는 진정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관계부처 협의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자자체에 시달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한 건 위주식 정책발표로 소위 환경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에 부딪치면 문턱을 넘는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지키기 어렵고 시간을 요하고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단칼에 무 자르듯 해버리겠다는 환경부의 호기는 오히려 반발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한쪽은 규제강화를 다른 한쪽은 먹거리인 축산업 경쟁력과 자원화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시대변화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순리다. 일례로 정부의 전업화, 규모화 정책에 발맞춰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축사 문제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현재 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FTA 개방농정으로 축산업 경쟁력은 악화일로에 있다.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축산업은 중요한 먹거리산업이다. FTA 체제 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규제강화로 축산농민들을 옥죄면 답은 뻔하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님을, 명분이나 형식이 아닌 현장의 의견과 내용이 잘 반영되는 균형점을 찾아 실질적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⑩